

대구지방법원

2000. 3. 24. 판결선고	[Red Seal]
2000. 3. 24. 원본영수	

제3민사부

당송	본송
2000. 3. 22.	[Red Seal]

판 결

312에게 짐영준 / 주증
후여합니다.
2000년 4월 4일
대구지방법원
서구판 방영준 [Red Seal]

사 건 99나10613 보험금

원고, 항소인 망 [redacted] 의 소송수계인

1. [redacted]

2. [redacted]

3. [redacted]

4. [redacted]

원고 3, 4의 주소 [redacted]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
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
피고, 피항소인

주식회사

대표이사

소송대리인

담당변호사

변론종결

2000. 3. 3.

원심판결

대구지방법원 1999. 6. 1. 선고 98가단59375 판결

주문

1. 원심판결 중 다음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

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

2. 피고는 원고

-에게 각

6,250,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. 7. 22.부터 2000.

3. 24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

2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
4. 소송비용은 제1,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5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및 항소취지

원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소외

세계 25,000,000

원 및 이에 대한 1997. 7. 8.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

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
는 판결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갑 제1 내지 4호증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

당심증인 의 각 증언(위 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
부분 제외)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달리
반증이 없다.

(1) 원고들의 부 소외 망 은 1996. 6. 24. 피고와 사이에 ① 피보험자 :
② 보험기간 : 계약일로부터 만 7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, ③ 보험료 납
입방법 : 연 1,521,650원 (9년), ④ 보험금액 :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⑦ 사망 또는
제1급 장해시 25,000,000원(사망보험금), ⑤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 또는 제1급
장해시 25,000,000원(재해사망보험금), ⑥ 책임개시일(계약일을 포함하여 3개월이 지
난날의 다음날) 이후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시 5,000,000원(암진단급여금), 그 암을
직접 원인으로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10,000,000원(암사망보험금), ⑦ 질병 또는

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0,000원(입원급여금), ④

수의자 : 만기시 입원장해시 , 사망시 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상속
설계보험계약(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(2) 위 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연 보험료 1,521,650원을 피고에게 납입하였고, 그 후 은 1997. 7. 7. 갑상선악성종양으로 사망하였으며,
그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위 만이 있었다.

(3) 위 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1999. 8. 20. 사망하였고, 그 상
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었다.

나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 상속인
인 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 25,00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
있다 할 것인데, 의 사망으로 위 채권은 원고들에게 균등한 비율로 상속되
었으므로,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,250,000원($=25,000,000 \times 1/4$)을 지급할 의무가 있
다.

2. 피고의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는,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인 위 이나 피보
험자인 위 은 피보험자가 1995. 6. 12.부터 1995. 6. 15.까지 고혈압으로 치료

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그 사실을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, 이는 상법 제651조가 정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위 이 사망하기 전인 1997. 6. 23.경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.

나. 그러므로 살피건대,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이나 피보험자인 이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약 1년 전인 1995. 6. 12.경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 및 피고가 1997. 6. 23.경 에게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, 한편 을 제1, 2, 4, 6, 7, 8호증, 을 제5호증의 1,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당심증인 의 각 증언(위 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)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, 위 은 1995. 6. 12. 감기증세로 위 에 찾아갔다가 혈압을 측정한 결과 고혈압(최고 170mmHg, 최저 110mmHg) 증상을 보여 같은 달 15.(당시 혈압은 최고 130mmHg, 최저 80mmHg였다)까지 2회 내원하여 10일간 혈압약을 투여받은 사실, 피고는 건강과 관련된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50세 이상

인 때에는 반드시 보험진단의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게 한 후 피보험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 피고의 사무처리기준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19

96. 5. 28. 당시 61세였던 []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는데, 그 결과

의 혈압이 정상혈압(최고 140mmHg, 최소 80mmHg) 범위 내에 있으며 신체에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취지의 보험진단의의 건강진단서가 발부되었던 사실, 1996. 6.

24.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모집인 []은 피고에게 알려야 할

사항에 대하여 []에게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 다만 병력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

아니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만 설명하였으며 이에 위 []이 감기

에 걸린 적이 있었다고 답변하자 위 건강진단서의 내용을 기초로 보험계약청약서상

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(이하 질문표라고 한다) 중 '과거의 건강상태'란 제18항 '최근

5년 이내에 ① 암 ② 백혈병 ③ 고혈압 ④ 협심증 ⑤ 심근경색 ⑥ 심장판막증 ⑦

간경화증 ⑧ 뇌졸중증(뇌출혈, 뇌경색) ⑨ 당뇨병 ⑩ AIDS 등의 병으로 치료, 투약,

입원 또는 수술,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'라는 항목을 비롯하여 모든 항목에

관하여 '없다'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전우분의

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, 원심증인 []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

지 아니하고, 달리 반증이 없다.

다.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의 보험모집인
인 은 보험계약자인 위 ·이나 피보험자인 위 ·에게 보험계약의 중
요한 사항인 과거의 건강상태, 구체적으로는 질문표 제18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
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, 다른 한편 질문표 제18항에 기재된 고혈압 외
의 다른 질병은 객관적으로 그 증세가 상당히 무거운 병으로서 일반적으로 질병으
로 인식됨에 별다른 의문이 없음에 반하여, 고혈압의 경우 그 특성상 일시적인 혈
압의 상승은 정상인의 경우에도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감기 등과
같은 다른 질병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얼마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도 있으며,
고혈압의 증상이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가 아닌 때에
는 그것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에 비추어, 위 이 1995. 6. 12.
감기증세로 병원에 찾아갔다가 고혈압 증세를 보여 그에 대하여 일시적인 약물치료
를 받은 후 곧바로 정상상태로 되돌아갔으며(같은 달 15.에는 혈압이 정상이었다),
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진단의에 의한 건강진단시에도 혈압이 정상이었던
사정(1995. 6. 12.경 이외에 달리 고혈압 증세로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
다)이라면, 비록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·이나 피보험자인
이 피보험자의 위와 같은 고혈압 치료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

도 이를 가리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,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,250,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8. 7. 22.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시 판결선고일인 2000. 3. 24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연 2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,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,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,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,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, 제92조, 제96조를,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

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00. 3. 24.

재판장 판사 김창석 김창석 

판사 박병태 박병태 

판사 최주영 최주영 